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19가합5763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203595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19가합576361 판결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피고(탈퇴) 겸 피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소영

피고승계참가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소영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파주시 C 공장용지 8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12. 체결된 각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표시장치) 제조관련 장비 배관공사업체인 B와 2016. 3. 3.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9. 9. 1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B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34178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구상금 460,506,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는 2018. 11. 12. 피고에게, 2016. 9. 6.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같은 날 각 채권최고액 30억 원, 4억 8,000만 원, 2억 4,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9.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21. 3. 5. 매각으로 위 각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B의 일반채권자의 담보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승계참가인의 주장

- 1)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그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이 없어 부적법하다.
- 2) 피고는 B가 자금유통을 통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 지원방안으로 예금채권 8억 4,250만 원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여 주는 대신 담보가치가 8,850만 원 남아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피고는 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3. 3. B와 신용보증한도를 8억 190만 원, 보증기간을 2016. 3. 3. ~ 2020. 3. 1., 보증방법을

회전보증(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② D은 2019. 6. 24. 원고에게 B가 2019. 2. 28.자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약 2년 8개월 전에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B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에 원고가 한 근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받아 그로부터 다시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난 점, ② 피고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에 대한 자금유동성확보 지원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는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던 상태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 해당여부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B와 여신거래를 하면서 2010.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B 소유의 공장용지와 그 건물 등(이하 ‘제1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0억 원인 1순위 근저당권에 이어 각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 받았고, B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근질권을 설정 받아 왔다.

2) B는 2018. 11.경 피고에게 자금경색으로 인한 회사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자금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B에 2018. 11. 12. 신규로 원자재구입자금 6억 원(변제기 2019. 5. 12.)을 대출하여 주고, 같은 해 11. 15. 아래 표 내역과 같은 근질권을 해지한 후 해당 예금을 모두 반환하여 주었다.

순번	설정일자	예금의 종류	설정금액	반환예금액
1	2016. 11. 11.	정기예금	1억 1,000만 원	400,197,494원
2	2017. 7. 7.	외화예금	미화 184,426달러	102,596,834원
3	2018. 4. 17.	외화예금	미화 142,092달러	192,646,091원
4	2018. 8. 1.	기업부금	13억 2,000만 원	147,140,744원
합계				842,581,163원

한편 피고는 2018. 11. 12. 시가 4억 45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후순위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3) 피고는 2019. 2. 11. B로부터 위 신규대출자금 6억 원을 원자재구입 업체대금으로 결제하였다는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였다.

4) B는 2019. 5.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2019. 2. 13. 무렵

발행한 어음들이 2019. 6. 10. 이후 모두 부도 처리되었다.

5) D은 2019. 6. 24. 원고에게 ‘디스플레이납품대금 약 25억 원의 입금지연에 따른 협력업체들에의 대금결제지연으로 인한 연쇄적인 자금유동성 경색이 B의 부도원인으로, 2018. 12. 반도체장비 등을 납품하였으나 건물의 준공지연으로 납품대금을 2019. 4. 이후에 수령한 것이

사고원인(발생경위)이고, 종업원퇴사 등 이탈 및 협력사 유동성부족 등으로 영업축소와 매출액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도 이후 투자사를 접촉하여 약 2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증사고발생통지서를 보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금난에 처한 B가 사업의 계속적 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대금 등 운영자금을 피고로부터 지원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신규로 6억 원을 대출받고, 8억 4,250만 원의 예금을 반환받은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은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통해 회사를 갱생하기 위하여 한 담보제공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B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을 당시 B는 대규모 납품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물품구입규모도 상당하여 거래처에 구입대금을 일부라도 결제하여야만 정상적인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

2) 이러한 상황에서 B는 피고에게 물품구입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때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하여 온 B가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에 빠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신규단기자금 6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담보가치가 8,85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 대신 8억 4,250만 원의 담보가치가 있는 예금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해지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제1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와 동일하기는 하나, 위 채무는 피고가 B와 2010. 2. 26.경부터 이루어진 계속적 여신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위 채무를 위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계약에 따른 담보설정은 예정된 예금질권 해지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그 담보가치의 10배에 달하는 예금을 반환하여 준 점을 고려하면, B의 이러한 담보제공은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덕식, 판사 명선아, 판사 이유섭